

『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예규('07.6.1)인 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”에 의거 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
- 금융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, 효율성,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금고 지정 방법(안 제3조)
 -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,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음
 - 금고는 일반·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별 한 개의 금고지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, 금고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였음
- 금고지정 평가기준(안 제4조)
 -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
 -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
 -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및 금고업무 관리 능력
 -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
 -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별표)
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 및 제6조)
 -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(시의회의원,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)
 -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 종료 때까지로 함
 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심의위원회 기능(안 제7조)
 -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
 -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
-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, 제안서 심의 및 평가 (안 제8조 및 제9조)
 -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에 시보 등에 공고, 관련 금융기관 통지
 -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·평가후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
- 금고지정과 약정 및 해지(안 제10조 및 제 11조)
 - 시장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지정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지정 기관에 통지
 - 금고 지정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 의무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함
- 금고운용 보고 등 (안 제12조 내지 제14조)
 - 금고는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
 - 시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
 - 금고지정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」 ('07.6.1 행정안전부 예규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예규('07.6.1)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 의거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14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금고의 자격요건을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구미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기관으로 하였으며
- 안 제3조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,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, 금고는 일반·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별 한 개의 금고지정을 원칙으로 하고, 금고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였음
- 안 제4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, 대출 및 예금금리, 지역사회 기여도 등 5개 평가분야 18개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였음
-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고,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

-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는 금고약정 만료 3개월전까지 공고하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심의표를 제출토록 하였음
-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장은 금고 지정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 및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통지토록 하는 금고의 지정과 약정 및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
-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금고운용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2가지입니다.

①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안 제3조 제1항 「시장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」 라고 규정하면서,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및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
-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
 - 같은 조 제2호 「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」
 - 같은 조 제3호 「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」
 - 같은조 제4호 「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,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」 등 3개조항 임

- 이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투명성 확보 등 조례제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
- 그러므로 안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는 삭제하고
- 안 제3조(금고 지정 방법)은 안 제3조제1항 본문과 제1호를 합쳐서 같은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
- 수정내용은 「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」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② 금고의 지정과 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안 제10조제1항 「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」라고 규정하면서 금고지정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금고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- 그러므로
 - 안 제10조제1항 내용중 「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」를 「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」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③ 위의 재검토사항 2가지가 수정 또는 삭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